**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내용증명**

본 통지서의 발신인(이하 ‘발신인’이라 함)

성 명 :

주 소 :

연락처 :

본 통지서의 수신인(이하 ‘수신인’이라 함)

성 명 :

주 소 :

연락처 :

발신인은 임차인으로서 수신인인 임대인 000와 서울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(2021. 1. 2. ~ 2023. 1. 1.)에 체결하였습니다.

발신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(2023. 1. 1.)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고, 임대차계약 종료일(2023. 1. 1.)에 수신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습니다.

수신인은 조속히 3천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라며, 더불어 임대인이 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다 반환 받을 때까지 법정이자율(연 5%)을 적용한 지연손해금(지연이자)를 배상해야 합니다.

* 지연손해금 = 30,000,000원 X 0.05 X 지연기간

수신인이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실 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되므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월 0일

발신인 : (인)

연락처 :